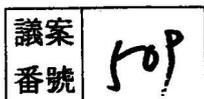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 (案)



提出年月日 : '94. 11. 29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현행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1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條例運營의 效率性을 위하여 現行 21個의 大田直轄市稅減免 條例를 統·廢合하여 單一減免條例로 制定함

나. 國家有功者의 生活安定과 關聯團體의 事業支援을 위하여 國家有功者 및 關聯團體에 대하여 市稅를 免除함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세를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2조)

(2) 국가유공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3조)

다. 社會福祉 支援을 위하여 障礙人所有 乘用自動車와 음성나환자 및 宗教團體 所有 不動産에 대하여 市稅를 免除함

- (1)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4조)
- (2)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5조)
- (3)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함 (안 제6조)

라. 社會教育施設 및 私立學校의 實驗·實習用機資材 擴充과 文化財保存을 위하여 市稅를 免除 또는 輕減함

- (1)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7조)
- (2)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건설기계·선박·입목 및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8조)
- (3)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함 (안 제9조)

마. 市内버스 및 市外버스運送事業을 支援하고 駐車場建設을 促進하며, 高速鐵道建設事業의 원활한 推進과 中古自動車去來 秩序確立등 交通政策支援을 위하여 市稅를 輕減함

- (1)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0조)

-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동안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수입금액을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함 (안 제11조)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로 경감함 (안 제12조)
 -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 바. 靑形自動車에 대한 自動車稅가 定額賦課에서 排氣量別賦課로 轉換됨에 따른 稅負擔의 一時的增加를 완화하기 위하여 平均 50% 程度의 自動車稅를 減免함 (안 제14조)
- 사. 住宅建設支援을 위하여 住宅建設事業者나 公共團體가 建築한 公共住宅 및 賃貸住宅과 住宅組合이 建築한 組合住宅에 대하여 市稅를 免除함
- (1)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등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5조 제1항)
 - (2)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6조 제1항)
 - (3) 주택조합이 건축한 85제곱미터이하의 조합주택과 동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7조 제1항)

- (4) 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아. 住宅改良再開發事業과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市稅를 免除함

-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개발사업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8조)

-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

자.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 또는 工團에 대하여 取得稅·登錄稅·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및 住民稅를 免除함 (안 제20조)

차. 都市가스事業의 基盤擴充을 위하여 都市가스事業에 直接 使用 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不動産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의 50%를 輕減함 (안 제21조)

카.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登記 申請時에 提出된 契約書中 個人間의 去來時 作成된 契約書에 의하여 課稅하는 境遇 取得稅와 登録稅의 100분의 30을 輕減함 (안 제22조)

타. 大田엑스포紀念財團등이 大田엑스포 紀念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大田世界博覽會場안에서 取得·所有하는 不動産에 대하여 取得稅·登録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免除하고, 收益事業에 使用하는 不動産은 課稅하고자 함 (안 제23조)

파. 條例의 適用時限은 1997年12月31日까지로 함 (안 부칙제2조)

3. 參考事項

가. 條例制定許可 : '94. 11. 11 (내무부장관)

나. 立法豫告

- 期 間 : '94. 11. 18~11. 28 (10일간)
- 方 法 : 市公報 掲載
- 結 果 : 提出된 意見 없음

다. 關係法令—— 地方稅法外 25個法令

○ 地方稅法

第7條(公益등事由로인한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公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등을 위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 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때에는 內務部長 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第112條 (稅率) ①取得稅의 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1,000分 의 20으로 한다.

②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別莊·골프場·高級住宅·高級娛樂場·法人의 非業務用 土地·高級自動車·高級船舶을 取得할 境遇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의 75으로 한다. 別莊등을 區分하여 그 一部를 取得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132條의2 (自動車登錄의 稅率) ①非營業用乘用自動車에 관한 登錄을 받을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1. 新規登錄 및 所有權移轉登錄
自動車價額의 1,000分의 50
2. 抵當權設定登錄
債權金額의 1,000分의 30

第196條의5 (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區分에 의한다.

1. 乘用自動車
排氣量에 씨씨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台當 年稅額으로 한다. 다만, 自動車 1台當 年稅額이 300萬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300萬 원으로 한다.

營 業 用		非 營 業 用	
排 氣 量	씨씨當 稅 額	排 氣 量	씨씨當 稅 額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410원
		3,000씨씨 초과	630원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삭제 <91. 12. 31>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 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 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의거상이자회 ·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2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第84條의4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의 範圍)

5. 土地定着物의 附屬土地(工場用建築物의 附屬土地를 除外한다)로서 그 地上定着物의 바닥면적(建物 以外의 施設物은 그 水平投影面積으로 한다)에 다음의 用途地域別適用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超過하는 土地. 이 境遇 地上定着物의 延面積을 建築法에 의한 當該地域 容積率로 나눈 面積의 100分の 120에 該當하는 面積이 用途地域別 適用倍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面積보다 클 때에는 이를 基準으로 하여 超過土地를 算定한다.

用 途 地 域 別		適用倍率
都 市 計 劃 地 域	· 주거전용지역	5 배
	·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3 배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 배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7 배
	· 미계획지역	4 배
都市計劃地域外의 地域		7 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영 제84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3급 내지 5급중 동시행령 별표3에 의한 분류번호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6급중 팔다리계통 장애(6급 1항의 경우는 분류번호 35. 36. 47. 48. 115 내지 117. 119내지 122. 125 내지 127 또는 129 내지 131을, 6급 2항의 경우는 분류번호 16. 30. 32. 37. 39. 40. 44. 49. 52 내지 54. 57 내지 60. 64. 65. 67. 69. 70. 74. 75또는 88을 말한다)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1. 3급중 2. 15. 17 내지 20. 33. 82. 84. 503

2. 4급중 106. 107. 110. 114. 504

3. 5급중 21. 45. 91. 93 내지 96. 505

○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法律

第46條 (貸付實施)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長期低利로 貸付를 實施한다.

第47條 (貸付對象者) 貸付對象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國家有功者

2. 國家有功者의 遺族中 年金을 받는 者

3. 國家有功者의 遺族中 年金을 받는者가 없는 境遇에는 第5條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이 경우, 子女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年齡까지의 子女로 하며, 同順位인 子女가 2人 以上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者로 한다.

第49條 (貸付의 種類) 貸付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土購入貸付

2. 住宅貸付(住宅購入·垜地購入·住宅新築·住宅改良·住宅賃借貸付를 말한다.以下 같다)

3. 事業貸付

4. 生活安定貸付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 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第1條 (目的) 이 법은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19義舉傷痍者會·4.19義舉犧牲者遺族會·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武功受勳者會를 設立함으로써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이 相扶相助하여 自活能力을 培養하고 殉國先烈과 護國戰歿將兵의 遺志를 이어 祖國統一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障礙人福祉法

第19條(障礙人登錄) ①障礙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保護者는 障礙狀態 其他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事項에 關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醫 療 法

第30條 (開設)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 民 法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 社會教育法

第21條 (社會教育施設의 設置) ①社會教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設·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 사회교육법시행령

제2조 (사회교육의 영역)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은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영역을 그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한다.

1.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2.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교육
4. 가족생활교육
5.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교육
6. 여가교육
7. 국제이해교육
8. 국민독서교육
9. 전통문화이해교육
10. 기타 학교교육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 教育法

第85條 (學校의 設立·廢止) ①國立學校와 法律에 의하여 設立義務가 있는 者가 設立하는 學校外의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設備·編制 其他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하며,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 및 幼稚園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 教育監의, 公·私立의 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說立하고자 하는 者는 教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文化財保護法

第4條 (寶物·國寶의 指定) ①文化體育部長官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中 重要な 것을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寶物에 該當하는 文化財中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가치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

第6條 (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文化體育部長官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紀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第7條 (重要民俗資料의 指定) 文化體育部長官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民俗資料중 중요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第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文化體育部長官은 第4條·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保護上 특히 必要한 境遇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등)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행 및 고속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駐車場法

第12條 (路外駐車場の 設置) ①都市計劃區域 안에서의 路外駐車場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 境遇 駐車場整備計劃이 樹立되어 있는 때에는 當該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가 都市計劃區域 안에서 路外駐專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路外駐車場の 構造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自動車管理法

第3條 (自動車의 種類) 自動車는 이를 乘用自動車·乘合自動車·貨物自動車·特殊自動車 및 二輪自動車로 區分하되, 그 區分은 自動車의 크기·構造, 原動機의 種類, 總排氣量 또는 定格出力을 基準으로 하여 交通部令으로 定한다.

第49條 (自動車管理事業의 許可등) ①自動車管理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自動車管理事業의 境遇에는 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附加價値稅法

第5條 (登錄) ①新規로 事業을 開始하는 者는 事業場마다 大統領令이 定하는 ̄에 ̄하여 事業開始日부터 20日內에 政府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新規로 事業을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開始日前이라도 登錄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하여 登錄한 事業者에게 大統領令이 定하는 ̄에 ̄하여 登錄番號가 賦與된 登錄證(以下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交付하여야 한다.

○ 住宅建設促進法

第44條 (住宅組合의 設立등) ③第1項의 住宅組合 또는 勤勞者를 雇傭하는 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包含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構成員 또는 勤勞者의 住宅을 建設하는 境遇에는 建設部令이 定하는 ̄에 ̄ 따라 登錄業者와 共同으로 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宅組合 또는 雇傭者와 登錄業者를 共同事業主體로 본다.

○ 賃貸住宅法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正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4. “賃貸事業者”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나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하여 住宅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地方公社(以下 “地方公社”라 한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하여 住宅賃貸事業을 하기 ̄하여 登錄한 者를 말한다.

○ 都市再開發法

第2條 (正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正義는 다음과 같다.

2. “再開發事業”이라 함은 再開發區域 안에서 土地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高度利用과 都市機能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하는 建築物 및 그 敷地의 整備와 垡地의 造成 및 公共施設의 整備에 관한 事業과 이에 附帶되는 事業을 말하며, 都心地再開發事業과 住宅改良再開發事業으로 區分하여 施行한다.

○ 都市低所得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

第7條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 ①住居環境改善事業은 市長등이 施行한다. 다만, 第6條 第1項 第3號 및 第4號에 관한 事業은 住民이 施行할 수 있다.

- ②建設部長官은 住居環境改善事業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の 申請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韓住宅公社 또는 都市開發事業을 事業目的으로 하거나 事業種目으로 하여 設立된 公法人(以下 “大韓住宅公社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 地方公企業法

第49條 (設立)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地方公社(以下 “公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②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을 條例로 定하여야 한다.

- ③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項의 條例에 公社의 定款을 添附하여 內務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 都市가스事業法

第3條 (事業의 許可) ①都市가스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商工資源部令이 定하는 정미한 事項을 除外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 (契約書등의 檢印에 대한 特例) ①契約을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記載된 契約書에 檢印申請人을 表示하여 不動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郡守(이하 “市長등”이라 한다) 또는 그 權限의 委任을 받은 者의 檢印을 받아 管轄登記所에 이를 提出하여야 한다.

○ 大田엑스포紀念財團法

第5조(事業) ②財團은 第1項 第2號 내지 第6號의 事業을 效率駒으로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當該 事業을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을 가진 者에게 委託하여야 한다.

○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관련 영업시설의 운용
2. 박람회관련 휘장사업
3. 박람회장안에서의 광고사업 (박람회장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

대 전 직 할 시

차 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2조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3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쉼터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16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7조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제18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1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 검인계약서사용등에 대한 감면

제23조 대전직할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

제7장 보 칙

제24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5조 감면신청등

제26조 시행규칙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및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자활용사촌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①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취득·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 대표자가 음성나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100만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전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전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4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1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및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때
2.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
3.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당해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전진기지·송전선시설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	10원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초과	15원	200원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

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본다.

제1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1가구1주택을 말한다.

제18조(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부동산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20조(지방공사들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감면계약서사용등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②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

제23조(대전직할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또는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 있는 자원활용관, 전기에너지관, 정보통신관, 자연생명관 및 번영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안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되, 꿈돌이동산, 곤도라, 모노레일 및 대식당 등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위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부동산(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전직할시장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대전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대전직할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대전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6. 대전직할시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별표 1>

상이등급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 에 그 대상이 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대전직할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한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년도/기분	당초세액	
	합계			
감면사유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 제〇〇조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〇 〇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대전직할시시세감면조례안
심 사 보 고

1994년12월27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1일 대전직할시장
2. 회부일자 : 1994년 12월 2일
3. 상정일자 :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1994. 12.
27) 상정, 심의,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1. 제 안 이 유

현행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1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21개의 대전직할시세감면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함.

나.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시세를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2조)

(2) 국가유공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3조)

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와 음성나환자 및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함. (안 제4조)

(2)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5조)

(3)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함. (안 제6조)

라.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 또는 경감함.

- (1)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7조)
- (2)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건설기계·선박·입목 및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8조)
- (3)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 경감함. (안 제9조)

마.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건설을 촉진하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고자동차거래 질서확립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하여 시세를 경감함.

- (1)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0조)
-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동안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수입금액을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함. (안 제11조)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로 경감함.(안 제12조)
-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바.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정액부과에서 배기량별부과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의 일시적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 50% 정도의 자동차세를 감면함. (안 제14조)

사. 주택건설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

(1)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등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5조 제1항)

(2)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6조 제1항)

(3) 주택조합이 건축한 85제곱미터이하의 조합주택과 동조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7조 제1항)

(4) 주택건설사업자·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안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

아.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세를 면제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개발사업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8조)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9조)

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함. (안 제27조)

차. 도시가스사업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1조)

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함(안 제22조)

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에서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자 함. (안 제23조)

파.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하고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현행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1. 조 례 현 황

◇ 현행 감면조례 : 총 21개

○ 94년말 종료 : 16개

○ 94년 이후 : 2개

┌ EXPO 기념재단 - 96. 12. 31
└ 고속철도 - 95. 12. 31

○ 적용시한이 없는 조례 : 3개

┌ 음성나환자
└ 지정문화재
└ 종교단체의료업

◇ 단일 통합 제정 조례 : 19개

◇ 현행 폐지 조례 : 2개

┌ 새마을사업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 먼저 현행 시세감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례가 16개, 94년 이후인 조례가 2개, 그리고 적용시한이 없는 조례가 3개등 모두 21개 조례가 개별로 규정되어 있음.

금번 통폐합안은 총 21개 개별조례중 사실상 감면목적이 상실된 새마을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와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19개 조례에 대하여 1개 조례로 단일화 하려는 것임.

그러나 본 통합안은 감면대상의 개별 성격으로 볼때 적용시한을 동일하게 한 것은 세제시책상 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보겠지만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봄.

2. 현행 감면조례 주요변경 내용

현행조례	제정안 변경(추가) 내용	감면세목	변경 (추가) 사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조례	- 주택면적 확대 · 현행 60㎡이하 → 85㎡이하로 확대	취득세 등록세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 감면대상에 시각장애인 1~4급 추가 - 배기량 · 현행 1500cc → 2000cc로 확대	자동차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 주차장 수입금액 완화 · 현행 공시지가의 7/100 → 3/100으로 완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다른 감면대상과 형평유지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조례	- 다세대주택 범위 · 현행 10세대이상 → 5세대이상으로 조정	취득세 등록세	다세대주택 건설 지원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현행없음)	- 도시가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타시도와 형평유지 ※ 현재 우리시만 미시행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감면세목	대체조문	변경사유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면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제2조 제2항 (주택면적 현행 60㎡ → 개정 85㎡)	다른 감면 대상과 형평 유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3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례	자동차세 면제	제4조(시각 1~4급추가 배기량 현행 1500cc → 2000cc)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5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면제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	도시계획세 ⇒ 1/1000 세율 적용	제9조	
시내버스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조례	등록세 면제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11조 (공시지가의 7/100 → 3/100)	다른 감면 대상과 형평 유지

현행 조례	감면세목	대체조문	변경사유
매매용 중고자동차세 대한 감면조례	취득세 면제, 등록세는 1000분의 10 세율 적용	제12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13조 (적용시한 '98년 → '97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기간 형평유지
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자동차세 50% 수준 감면	제14조	
주택건설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또는 50% 감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시개발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제18조, 제19조	
지방공사에 대한 면제 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면제	제20조	
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조례	취득세, 등록세 30% 감면	제22조	
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면제조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제23조 (적용시한 '96년 → '97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기간과 형평 유지

다음은 현행 감면조례의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면제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의 면적을 타감면대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둘째,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감면대상에 시각장애인을 추가하고 면제대상 자동차의 배기량을 현행 1500cc에서 2000cc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셋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주차장 수입금액의 완화를 위해 현행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넷째,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다세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하여 다세대주택 범위를 현행 1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다섯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례로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다만, 본 도시가스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2년 12월 당의회에서 감면기간 연장의 건으로 심의되었던 사항이며,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 보다는 사인의 영리추구에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적용시한 만료로 자동 폐지되었던 사항임.

끝으로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면제 적용시한이 변경된 조례가 있는데 96년 12월 31일까지인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의 면제조례가 1년 더 연장되었으며(안 제 23조),

98년 12월 31일까지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면제조례는 1년 단축되었음. (안 제13조)

그리고 안 제6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당초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 경감토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개정안

제291조가 등록세는 과세 전환하고 나머지는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재 수정되어 이를 변경한 것임.

금번 대전시의 시세감면 조례안은 분야별 개별조례를 단일화하는 동시 지방세 감면의 폭을 일부 조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본 조례에 새로 포함된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라고 보겠음.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 의 및 답 변 요 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도시가스에 대한 감면에 있어 금년도 우리시의 도시가스 인상율은 타시도보다 높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특혜 주는것 아닌지	○ 전국에서 우리시만 감면해 주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엑스포 기념재단은 영리단체로써 감면혜줄 이유가 있는지</p>	<p>○ 이미 9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시기까지는 불가피하다고 봄.</p>
<p>○ 엑스포 기념재단에 대해서는 시세 34억원등 지방세 약 37억원 정도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는 지역 고용증대 효과등 종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대전시민이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p>	<p>○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고 봄.</p>

VI.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요지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4. 12. 27 내무위원장

나. 수정이유 : 별 첨

다. 주요골자 : 별 첨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를 “삭제”한다.

안 “제22조” 를 “제21조” 로 “제23조” 를 “제22조” 로 “제24조” 를 “제23조” 로 “제25조” 를 “제24조” 로 “제26조” 를 “제25조” 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일자 : 1994. 12. 27

제 출 자 : 내무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시세감면대상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목적 이 공익 또는 공공성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바, 동법 감면 취지에 비추워 볼때 공공성보다는 영리추구에 목적이 있는 도시가스 사업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 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 여 대전엑스포 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은 당초대 로 9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토록 1년을 단축시키려는 것 임.

2. 주 요 골 자

가.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21조)

나. 안 제23조의 대전엑스포 기념재단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부칙 제2조)

대전직할시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21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전 6월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u>제22조 (생 략)</u> <u>제23조 (")</u> <u>제24조 (")</u> <u>제25조 (")</u> <u>제26조 (")</u></p>	<p>(삭제)</p> <p><u>제21조 (조례안과 같음)</u> <u>제22조 (")</u> <u>제23조 (")</u> <u>제24조 (")</u> <u>제25조 (")</u></p>
<p>부 칙</p> <p>제1조 (생략) 제2조 (적용시한) <u>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 제3조 (생략)</p>	<p>부 칙</p> <p>제1조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적용시한) <u>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 제3조 (조례안과 같음)</p>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94. 12.

제 출 자 : 대전직할시장

1. 수정이유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개정안 제291조의 규정이 국회에서 등록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됨에 따라,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하여 등록세는 과세하고, 기타 시세는 면제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 경감을 (원안 제6조)

나. 등록세는 과세전환하고, 취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과세면제함 (수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수정허가 : '94. 12. 6 (내무부장관)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중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수정안
<p>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